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3. . .<br>(제 회) |      |

대 · 중 소 기 업 상 생 협 력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br>(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3.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 3.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1.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 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조정요건
4.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납품대금 연동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7.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수탁·위탁거래의 기간과 납품대금을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 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  
에 따른 조사권한 및 처분권한을 위임함(안 제27조제3항)
- 라.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별점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을 규정함(안  
별표3)
- 마.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안 별표4)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3.6.23. ~ 8.2.(40일 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 예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약정서 기재사항)”을 “(약정서 기재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 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조정요건
4.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납품대금 연동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7.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또는 제25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28조제1항의 분쟁의 조정 요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벌점의 부과
3.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제1호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면제
4.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벌점의 경감
5.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별표 3 제2호가목1) 가) 법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              |
| 법 제21조제2항 위반행위              |
| 법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위반행위 |
| 법 제21조제6항 위반행위              |

별표 3 제2호가목1)나)부터 바)까지를 각각 다)부터 사)까지로 하고,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br>행위 금지위반 | 법 제21조제4항 위반행위 |
|-----------------------------|----------------|

별표 3 제2호가목1) 사) 법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법 제23조 위반행위          |
|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2 위반행위  |
| 법 제25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    |
| 법 제25조제1항제5호 위반행위    |
| 법 제25조제1항제7호 위반행위    |
| 법 제25조제1항제9호 위반행위    |
| 법 제25조제1항제10호 위반행위   |
| 법 제25조제1항제11호 위반행위   |
|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 위반행위 |

별표 3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1)라)”를 “가목1)마)”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4)나)(1) 및 (2) 중 “간”을 각각 “간 납품대금조정제도를 통해”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1)나)에 따른 위반유형에 해당하여 가목2)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점수를 부과한다.

1) 위탁기업이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합의를 하는 경우 : 5.1점

2) 그 밖에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 3.1점

6)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만 반영한다).

가) 연동계약 체결비율(위탁기업이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중 연동계약(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계약만 인정한다)을 포함한 계약건수의 비율)이 10%이상 50% 미만인 경우 : 1점

나)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2점

다) 법 제22조의3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경우 : 2점

별표 4 제1호다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법 제22조의3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경우

별표 4 제2호나목의 과태료란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라. 법 제 21조 제4항을 위반한 경<br>우 | 법 제43조 제<br>2항 제2호 | 3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

별표 2 제2호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2항”을 “법 제43조제  
2항제1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신<br>설> |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①<br>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납<br>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등의<br>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br>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br>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br>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br>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br>등의 명칭<br>2. 주요 원재료<br>3. 조정요건<br>4.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br>5. 납품대금 연동 산식<br>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br>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br>시점<br>7.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br>금 반영일<br>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br>음)<br>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br>“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br>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
| (생략)                    |                                                                                                                                                                                                                                                                                                                                                                                                                               |
| <신 설>                   |                                                                                                                                                                                                                                                                                                                                                                                                                               |

<신 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신 설>

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또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28조제1항의 분쟁의 조정 요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  |                                                                                                                                                                                                      |
|--|------------------------------------------------------------------------------------------------------------------------------------------------------------------------------------------------------|
|  | <p><u>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br/>벌점의 부과</u></p> <p><u>3.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br/>제1호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br/>명령의 면제</u></p> <p><u>4.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br/>벌점의 경감</u></p> <p><u>5.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출<br/>요구 및 조사</u></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
| 연 락 처            | (044) 204 - 7908 |